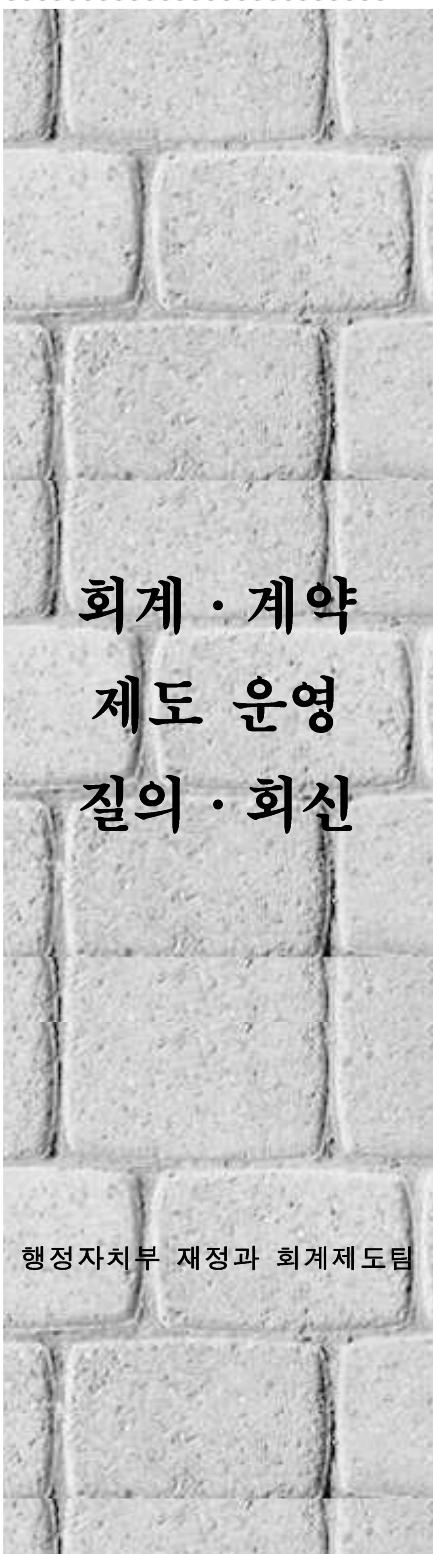


## ◆ 질의와 회신 ◆



### 회계 · 계약 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과 회계제도팀

#### [회계제도관련 질의]

##### 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 【질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 공사에 있어 동일인이 연차적으로 발주한 동일구간의 도로화·포장공사를 수년동안 수회에 걸쳐 준공한 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동예규 별첨양식2,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2. 실적발급기관의 오류에 의해 실적증명이 발급된 경우 시공실적증명 보완 가능여부

###### 【질 의】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를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에 있어 제한실적 이

상인 시공실적을 실적증명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적격심사중 발급기관이 당해 실적증명을 정정통보 하여 시공실적이 제한조건에 미달한 경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 되어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실적서류로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을 정하였으나, 실적증명발급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제15조제1호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에 해당하는 실적서류로 보완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정당하게 발급한 실적서류인 경우에는 입찰실시후 보완할 수 없을 것임.

## 3. 신인도가점 가능여부

### 【질 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지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수행능력평가), 1-3(신인도) 심사항목에 “관련법령에 따라 우수업체(자)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 “관련법령”의 구체적 범위와
-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른 00시장의 모범중소기업 표창 수상업체도 관련법령에 의한 신인도평가의 가점대상이 되는지 여부
  - 갑설(00시 의견) : 관련법령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된 자로 한정하며,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따른 00시장의 모범중소기업 표창은 가점대상이 되지 않음.
  - 을설 : 관련법령이라 함은 모든 법령과 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따른 00시장의 모범중소기업 표창도 가점대상이 됨.

회 신

질의하신 ‘관련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지4]의 제목에 제시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에 관련된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따른 00시장의 모범중소기업 표창 수상업체는 신인도 평가의 가점대상이 아님.

#### 4. 시공경험평가 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평가에 있어 추정가격이 ‘A’원이고 3년간 실적누계액이 ‘B’원인 경우에 평가방법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6>에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은 ‘B’원/‘A’원=0.xxxxxxxx×100%=XX.xxxx%로 산정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5. 분할 등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경영상태평가에 있어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 등기된 업체가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새로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3> 5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 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동 합병 등의 등기일(신고수리일 포함)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새로운 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합병 등기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합병에 의한 새로운 결산서를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6.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평가가능 여부

**【질의】**

2002. 4. 12 입찰공고하고 2002. 5. 29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00건설에서 제출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가 2002. 3. 31자 양수결산서에 의거 2002. 5. 29자로 관련협회에 등록한 평가자료인 경우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인정가능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89호)제2조의 규정에 각 평가요소(경영상태, 시공경험 등)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 <별표3> 5.에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영상태평가의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져 적격심사 제출일까지 경영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라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평가가 가능함.

## 7. 면허보유와 시공실적 인정범위

### 【질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99호)」 <별표1> “시공 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I -3-⑧(면허보유에 따른 실적인정)에는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실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 8. 분할의 경우 시공실적 승계가능 여부

### 【질의】

기존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있어 과거실적 승계여부

#### 회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99호)」 <별표1> “시공 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I -3-⑨(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분할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분할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됨.

## 9. 하도급공사 실적인정 범위

### 【질의】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을 한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실적인정 범위는?

#### 회신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전문건설업자(하수급자)의 실적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제2조 제항제3호에 의한 <별표9>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거 원도급자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10. 하도급공사 실적인정 범위

###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중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 준공한 터널공사에 있어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 공정만 하도급한 경우,

- ① 터널부분 전체의 공정을 하수급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② 공동도급 구성원 전체의 하도급실적에 대한 날인 없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인정가능 여부

#### 회신

질의①,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 내에서만 실적을 인정하며, 이 경우 출자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여 부분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11. 공동계약집행기준

###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시 공동계약집행기준의 요율(100분의 40이상)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2조제2항의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비율의 100분의 40이상 되어야하며,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사에 한함.

##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등에 따른 계약이행 방안

### 【질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공사에 있어 대표사가 회사사정(부도)으로 시공권을 포기한 경우,

- ① 잔존구성원이 면허·계약이행조건 등을 갖추지 못하고 연대보증인도 없는 경우에 향후 계약이행 방안
- ② 대표사 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는 타설준공후 준공금액중 대표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산하고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 질의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재경부 회계예규)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계약이행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 ○ 질의②에 대하여

- 대표사의 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이므로 타설준공후 대표사의 준공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면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는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최종적인 것은 사법부의 결정 및 판단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임.

## 13. 수의계약을 지역제한으로 가능여부

## 【질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의 지역제한을 기초자치단체 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규모이하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있어서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과는 무관함.

다만, 수의계약은 계약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지역제한을 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14.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공사의 공동도급업체 범위

##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시·도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 공동도급이 가능한 지역업체(자)의 범위는?

회 신

지방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0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주된 영업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입찰공고를 하였다면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사업자만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임.

## 15. 입찰참가 가능여부

【질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분담이행방식)도급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전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에 공동도급 구성업체가 내부적 사정에 의거 입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잔존구성원인 대표업체가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다면 단독으로 사업수행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후 적격자 선정 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공동 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일부구성원이 내부사정 등으로 입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16. 하자처리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질의】

공사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금중 일부를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

## 잔액에 대한 처리방안

###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임.

## 17. 지체상금 부과기준

###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의무지체로 인한 지체상금부과시 기성부분의 지체상금에서 제외 여부

###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의무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18. 지체일수 산입여부

### 【질의】

지체상금부과 기간중에 우천 및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간의 지체일수 산입 여부

###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제32조(불가항력)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하신 우천 등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19.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

### 【질의】

발주시 설계서에는 모든 항목이 계상되었으나 집계시 일부항목의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는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제19조(설계변경등)제1항제1호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는 동요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요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여야 할 것임.

## 20.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별도 재무제표 인정여부

###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있어

- ① 관할세무서에 연말결산서 제출시에는 업체전체의 합산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에는 지점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점 재무제표로 적격심사 평가가능 여부
- ②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지점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과목 중 유형자산내 기계장치비가 세무서에 제출한 합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과목의 유형자산내 연구개발설비에 합산 신고했다고 할 경우에 지점의 기계장치비로 적격심사 평가가능 여부

### 회신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제조능력 및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01호) 제7조제2항에 최근 1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말결산서 제출시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2호 및 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 21. 공사수행능력 결격사유

### 【질의】

방조재개보수공사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제한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을 각각 별도 보유하고 토목분야 기술자 4명, 건축분야 기술자 7명을 보유한 경우, 당해 공사(토목분야)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제3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자 10인 이상으로 토목기술자 4인 이상, 건축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당해 공사(토목분야) 수행능력평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22. 원가계산방법

【질 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비용의 원가계산반영 가능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동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제10조(경비)제13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계상하여야함.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음.

## 23. 입찰 및 계약집행절차

【질 의】

00도에서 발주한 00시설공사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

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제4조제7항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중 적격심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당해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4. 입찰 유·무효

#### 【질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 11. 26일 입찰공고하고 동년 12. 3일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명의변경(등본상 11.21.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 여부

####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등록마감일(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당시의 법인등부상의 대표자가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공사입찰유의서”(재경부 회계예규)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됨.

## 25.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질의】

전자입찰에 있어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은?

- (갑설) 전자입찰을 통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수발생기를 이용한 추첨이 원료되어 발표된 1순위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을설)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결정00도에서 발주한 00시설공사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98호)제5조제2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와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통일적인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익산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위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인 바, 질의사항과 같이 당해 기준에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였다면 그 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것임.

## 26. 낙찰하한율 오류적용시 처리방법

###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입찰 진행절차는?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고, 입찰가격의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평점 산식에 의거 낙찰하한율이 결정되며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질의사항과 같이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평점산식(낙찰하한율)의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격평점산식(낙찰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7. 지방재정법 및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님. 따라서 동 공사·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 28. 시행중인 공사의 발주기관 변경에 따른 집행방법

**【질 의】**

당초에는 ○○군청에서 군도획·포장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도중 지방도(道)로 승격되어 동일도로에 대하여 ○○도청에서 다시 발주를 하는 경우 도청에서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하는지

##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당해 공사계약관련 예산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다만,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 29. 장기계속공사

## 【질 의】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준공처리, 지체상금부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연대보증인의 입보방법은

## 회 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하여야 하며, 지체상금도 연차별로 산정·부과하는 것임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매년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전체공사 완공후에 일괄적으로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매년도 계약 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공사 완공후에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함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가 있으며, 제2차이후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증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임

## 30.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 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 31.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등

#### 회 신

○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 <답변>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면허에도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임

○ 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 32.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33. 전부명령 등

#### 회 신

법원의 전부명령이 세무서의 채권압류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전부명령 해당부분의 채권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은 압류할 수 없음. 원계약자의 압류처분효력은 원계약자가 시공한 부분까지만 미친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해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의

청구없이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징구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사대금중 부가가치세는 전부명령 집행과 관련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위납부할 의무는 없음

